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,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 - 현행 25개 조항 → 16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
-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10,000원으로 인상(안 제6조)
 - 읍·면 지역 : 3,000원 → 10,000원
 - 동 지 역 : 4,500원 → 10,000원
-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「지방세법」의 표준세율로 적용(안 제6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구미시 시세 기본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 (25개→16개로 축소)
- 안 제6조에서 관내 전 세대 주민세 세율을 10,000원으로 인상함.
- 안 제6조에서 16조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「지방세법」의 표준세율로 적용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,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「지방세법」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려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